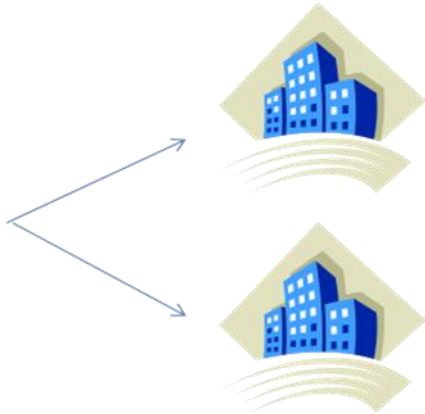


2011년
사증
절차
안내

1. 사증 신청 절차 개황

가. 접수기관

□ 2011.1.10(월)부터 대사관 또는 대사관이 허용한 사증신청 대행기관에 사증신청 가능



대사관 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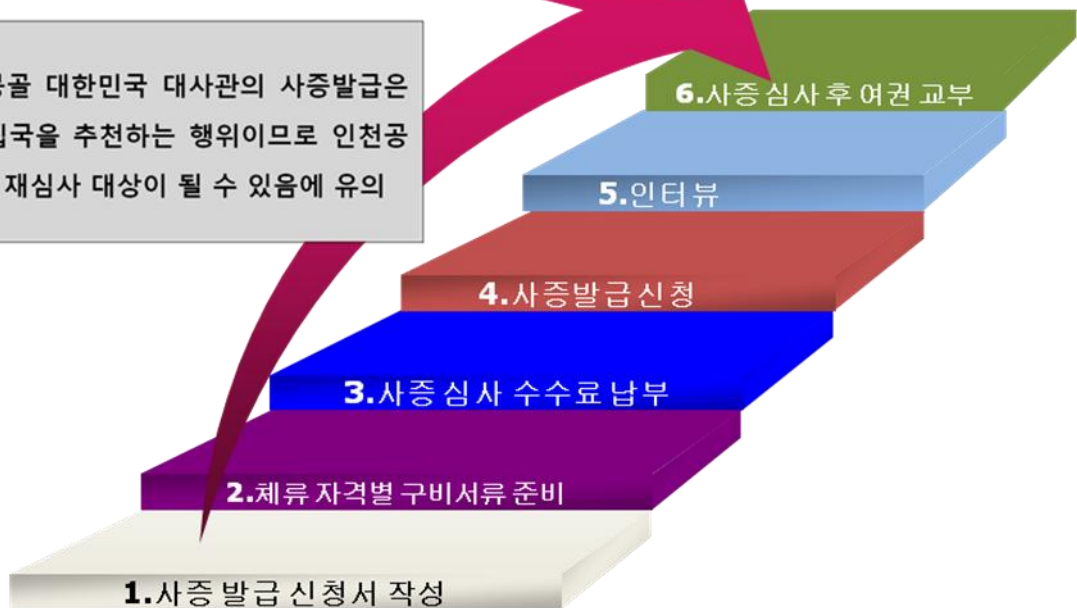
* 매주 화요일 10:00~12:00 접수

사증신청 대행기관 접수

* 매일 대행기관별 업무 시간 내 접수

나. 사증신청 절차

□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은 한국 입국을 추천하는 행위이므로 인천공항에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





..... 사증 발급 신청서 작성

-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및 대행기관에 비치
- 몽골어 사증 안내 사이트 (대사관 홈페이지 몽골어 팝업창을 통해 링크)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: <http://mng.mofat.go.kr>

..... 체류자격 별 구비서류 준비

-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 (별도 자료 참고)
- 몽골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필요 (사회보험증 및 통장사본은 번역할 필요 없음)

..... 사증 심사료 수수료 납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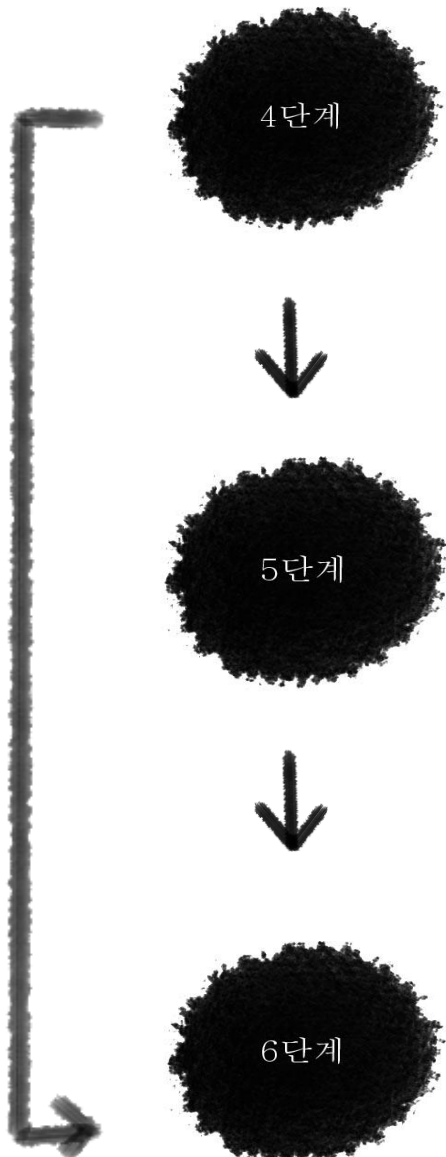
- 사증 심사 수수료는 KHAN 은행을 직접 방문, 납부하고, 노란색 영수증을 사증 신청시 함께 제출

◆ 사증 심사 수수료

-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 사증: US \$30
- 체류기간 90일 초과 단수 사증: US \$50
- 복수 사증: US \$80

◆ KHAN 은행 계좌 번호: 5038005602

(예금주: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)



..... 사증 발급 신청

- 사증신청후 사증 접수증 보관

..... 인터뷰

- 유학(D-2), 어학연수(D-4), 결혼(F-2) 사증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사 인터뷰 실시
- 인터뷰 시간은 대상자에게 전화로 개별 통보
- 인터뷰시 접수증, 신분증 지참

..... 사증 심사 후 여권 교부

- 사증발급 소요시간은 단기사증은 2주일, 결혼사증은 1-3개월 소요 (사증심사기간은 접수처와 무관함)
- 사증 심사 후 사증이 부착된 여권을 신청자에게 교부
※ 대사관 접수시 여권교부일 : 매주 화요일 16:00-18:00
- 사증 발급이 불허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간 사증 신청이 제한됨에 유의

2011년
사증
절차
안내

2.사증 관련 기본 사항

가. 일반 사항

□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의 체류자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음

단수사증

- ① 단기상용(C-2): 체류기간 90일
 - ② 단기종합(C-3): 체류기간 90일
(순수관광, 친척방문, 회의 참석, 의료관광 등)
 - ③ 유학(D-2): 체류기간 6개월 또는 1년
 - ④ 어학연수(D-4): 체류기간 6개월
 - ⑤ 결혼(F-2): 체류기간 90일
→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는 경우
장기거주비자 전환 가능
 - ⑥ 외국인고용 허가제(E-9):사증상 체류기간
 - ⑦ 기타
- ※ 상기 체류 자격 이외의 입국 사증에 대해서는
대사관에 직접 문의 (Tel : 32-8898)

복수사증

- 단기상용(C-2) 및 단기종합(C-3) 사증에
대해서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
발급 가능



- E-9 사증을 제외하고는 한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것은
체류자격을 벗어나는 행위임
-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의도가 밝혀지는 경우 사증발급이
불허됨

나.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경우: 체류기간 30일

▶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

▶ 최근 2년간 4회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체류자격에 위배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자

▶ 경유 (5개국만 허용)

- 미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캐나다 사증을 소지한 몽골인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거나,
 - 상기 국가로부터 몽골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경유할 경우
- ※ 출입국 심사 시 최종 도착지 항공권 제시 필요

다. 복수사증

▶ 복수 사증은 단기상용(C-2) 및 단기 종합(C-3) 사증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

▶ 복수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 신청 시 자신의 해당 사유별로 서류를 준비

▶ 복수 사증 심사 수수료 : US \$80◀

※ 아래의 자는 **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(유효기간 1년)** 신청가능

-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한국을 빈번히 방문하려는 자
-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, 자녀, 직계가족

※아래의 자는 **1회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(유효기간 1년)** 신청 가능

- ①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
- ② 대한민국에 정기 취항하는 항공사의 승무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
- ③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및 기간에 관계없이 총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자
- ④ 한국과 자원·에너지 개발·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, 한국의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·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
- ⑤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과 그 자녀
- ⑥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OECD 국가 (한국 제외) 방문자
- ⑦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중 우수고객 (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)
- ⑧ 사회 지도층 인사(주요 기업체 임원 등 포함)로서 공관장이 인정하는 자
- ⑨ 단기상용(C-2), 단기종합(C-3)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

▶ 신청인이 과거 한국 체류 중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통고처분 (범칙금)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,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.

라. 사증 신청 대행기관

-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 신청 대행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음
- 사증신청 대행기관은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
- 사증신청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, 사증 업무 관련 대사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, 주몽골대사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- 사증신청 대행기관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음
 - ①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서 서류 취합 및 대사관 전달
 - ② 사증 심사 종료 후 여권교부
 - ③ 대한민국 입국사증에 대한 정보제공

마. 사증발급 인정번호

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발급받은 경우

- ▶ 사증발급신청서, 수수료, 여권(사본),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.
- ▶ 사증발급 인정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대신 반드시 대사관에 접수해야 함.
(대사관 업무시간 중 언제든지 접수가능)
- ※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



3. 사증 종류별 설명 및 심사 원칙

체류자격	해당자	사증 심사 원칙
단기상용 (C-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국기업 지사, 외국인투자기업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-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- 국내 공.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.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-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및 관련자 (설치,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) <p>※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제공의 형태로 기술, 기능을 습득하는 형태의 연수 목적에 대해서는 단기사증 발급 불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장조사, 계약체결, 구매활동이 아닌 차량 분해 작업이나 선적작업 등과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-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실적으로 그 기업이 활동중임을 입증하고, 사장의 출장명령서,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으로 그 기업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- 상용목적으로 재차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 방문시 구매한 실적으로 입증해야 함
단기종합 (C-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, 통과, 요양, 친지방문, 친선경기, 각종 행사 회의참가 또는 참관, 문화예술, 일반 연수, 강습, 종교의식참석, 학술자료 수집,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(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순수 관광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 유무 ▶ 친척방문.결혼식참석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경제력 및 친척관계의 정도 ▶ 회의.세미나 행사참석 등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초청자와의 관계(업무유관성), 피초청자의 직업(사회보험가입 여부) 등 ▶ 의료 관광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의료목적의 진실성, 경제력 ▶ 교민투자회사 직원의 방한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재직여부, 방문목적 등

<p>유학(D-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·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 (학사, 석사, 박사)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증·성적증명 등 진위여부 - 유학목적의 진실성, 학습계획 - 학교성적, 어학능력 등 수학능력 - 학비부담 능력 등 경제력 ※ 인터뷰 실시 ※ 해당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뷰 결과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
<p>어학연수 (D-4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- 유학(D-2)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 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위증, 성적증명 등 진위여부 - 어학연수 또는 연수후의 계획 - 학교성적 등 수학능력 - 학비부담 능력 등 경제력 ※ 인터뷰 실시 ※ 해당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뷰 결과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
<p>결혼(F-2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 또는 영주(F-5)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혼인의 진정성 여부 - 제출서류의 진실성 - 혼인생활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 유무 ※ 인터뷰 실시